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30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1. 11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 조정위원회 대행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을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개정 및 신설(안 제10조 제2항 ~ 제5항)
- 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신설(안 제12조)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사항 : 2017회계년도 당초예산 편성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 의견 반영
- 라. 입법예고 : 2016. 9. 7 ~ 10. 4(의견 없었음)
- 마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하고 제2항부터 5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.
- ④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,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총괄과 재난 관리담당으로 한다.

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 계획
- 2. 기금 계획의 변경사항
- 3. 기금의 결산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p> <p>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30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6. 11. 11.(금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6. 11. 16.(수)
- 위원회심사 : 2016. 11. 29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근배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구정조정위원회 대행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을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개정 및 신설(안 제10조 제2항 ~ 제5항)
- 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신설(안 제12조)

4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라 기존 구정조정위원회 대행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민간전문가 위촉직 위원 비율을 개선하여 기금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